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기 권

●법률 제1391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기 권

●법률 제1391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자료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납입자료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납입자료
 4.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5.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보안교육 등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진폐위로금 지급 등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1호,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진폐 유발의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등 이행수단을 확보하고 있어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도 이에 따라 가능하므로 분진사업장의 대행 측정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현재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자료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
- 나. 분진사업장의 대행 측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조 및 제7조의2 삭제).
- 다.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